

【별표3】 <개정 2025. 12. 5., 2026. 6. 1.>

가점부여기준(제19조의2제6항 관련)

가점 종류	부여기준	적용대상								
타 부처 파견 (인사교류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점 : 월 0.025점(최대 1점) *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 전체기간에 가점부여 									
자체감사담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점 : 월 0.025점(최대 1점) *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 									
우수창안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	(최대 1점) ·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부여 * 자체우수제안 : 제안별 0.25점 범위 내 * 중앙우수제안 : 제안별 0.50점 범위 내 ·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공무원 선발 등급별 차등 부여 * 최우수 : 0.25점 범위 내 * 우수 : 0.15점 범위 내 ※ 수상자가 여러 명일 때 기여도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가점 결정	5급 이하 공무원 (연구직 포함)								
전문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관으로 보직된 날로부터 동일직급에서 2년이 경과한 전문관에 대해서만 부여 · 근무기간별 차등 부여(최대 1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2년 미만</td> <td>2년</td> <td>2년초과~4년이하</td> <td>4년초과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0.18점(월0.015*1년)</td> <td>월 0.015점</td> <td>월 0.02점</td> </tr> </table>	2년 미만	2년	2년초과~4년이하	4년초과	-	0.18점(월0.015*1년)	월 0.015점	월 0.02점	
2년 미만	2년	2년초과~4년이하	4년초과							
-	0.18점(월0.015*1년)	월 0.015점	월 0.02점							
다자녀 양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녀인원수별 차등부여(최대 1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2자녀</td> <td>3자녀이상</td> </tr> <tr> <td>0.5</td> <td>1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부부공무원인 경우 개별 적용 ※ 8급 및 9급에서 상위승진시 각각 적용 	2자녀	3자녀이상	0.5	1	8급 이하 공무원				
2자녀	3자녀이상									
0.5	1									

* 현 직급에서 취득한 경우로 한정